



「교육기본법」

• 국 가·지 역: 일본

• 법 률 번 호: 평성18<2006>년 법률 제120호

• **공 포 일**: 2006년 12월 22일

원문 번역문

我々日本国民は、たゆまぬ努力によって築いてきた民主的で文化的な国家を更に発展させるとともに、世界の平和と人類の福祉の向上に貢献することを願うものである。

我々は、この理想を実現する ため、個人の尊厳を重んじ、 真理と正義を希求し、公共の 精神を尊び、豊かな人間性と 創造性を備えた人間の育成を 期するとともに、伝統を継承 し、新しい文化の創造を目指 す教育を推進する。

ここに、我々は、日本国憲法 の精神にのっとり、我が国の 未来を切り拓ひらく教育の基 本を確立し、その振興を図る 우리 일본 국민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구축한 민주적·문화 적 국가를 더욱 발전시키는 동시에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지 향상에 공헌하기를 염원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고,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며, 공공의 정신을 존중하고, 풍부한 인간성과 창조성을 갖춘 인간의 육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지향하는 교육을 추진한다.

이에 우리는 일본국헌법의 정 신에 따라 일본의 미래를 개 척하는 교육의 기본을 확립하 고 그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





ため、この法律を制定する。

第一章 教育の目的及び理念

第一条(教育の目的)

教育は、人格の完成を目指し 、平和で民主的な国家及び社 会の形成者として必要な資質 を備えた心身ともに健康な国 民の育成を期して行われなけ ればならない。

第二条 (教育の目標)

教育は、その目的を実現する ため、学問の自由を尊重しつ つ、次に掲げる目標を達成す るよう行われるものとする。

- 一 幅広い知識と教養を身に 付け、真理を求める態度を 養い、豊かな情操と道徳心 を培うとともに、健やかな 身体を養うこと。
- 二 個人の価値を尊重して、 その能力を伸ばし、創造性 を培い、自主及び自律の精 神を養うとともに、職業及 び生活との関連を重視し、 勤労を重んずる態度を養う こと。
- 三 正義と責任、男女の平等 . 自他の敬愛と協力を重ん

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1장 교육의 목적 및 이념

제1조 (교육의 목적)

교육은 인격의 완성을 목표 로, 평화롭고 민주적인 국가 및 사회의 역군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춘 심신 모두 건강 한 국민의 육성을 위해 실시 되어야 한다.

제2조 (교육의 목표)

교육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 면서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도 록 실시한다.

- 1.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익히고, 진리를 추구하는 태 도를 기르며, 풍부한 감성과 도덕심을 기르는 동시에 건 강한 신체를 만들 것 2.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능력을 키우며, 창조성을 기르고, 자주 및 자율의 정 신을 기르는 동시에 직업 및 생활의 관계를 중시하고, 근면을 중시하는 태도를 기 르는 것
 - 3. 정의와 책임, 남녀평등, 상호존중과 협력을 중시하





ずるとともに、公共の精神に基づき、主体的に社会の形成に参画し、その発展に寄与する態度を養うこと。 四生命を尊び、自然を大切にし、環境の保全に寄与する態度を養うこと。

五 伝統と文化を尊重し、それらをはぐくんできた我が 国と郷土を愛するとともに、他国を尊重し、国際社会の平和と発展に寄与する態度を養うこと。

第三条(生涯学習の理念)

国民一人一人が、自己の人格を磨き、豊かな人生を送ることができるよう、その生涯にわたって、あらゆる機会に、おらゆる場所において学習することができ、その成果を適切に生かすことのできる社会の実現が図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条 (教育の機会均等)

すべて国民は、ひとしく、そ の能力に応じた教育を受ける 機会を与えられなければなら 는 동시에 공공의 정신에 기초해 주체적으로 사회의 형성에 참여하고 그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 4.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

5.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그 전통과 문화를 육성한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 는 동시에 다른 나라를 존 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 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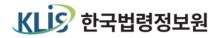
제3조 (생애학습의 이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연마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그생에에 걸쳐 모든 기회, 모든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고, 그성과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여야한다.

제4조 (교육의 기회 균등)

① 모든 국민은 그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받아야 하며, 인종,





ず、人種、信条、性別、社会的身分、経済的地位又は門地によって、教育上差別されない。

2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障害のある者が、その障害の状態に応じ、十分な教育を受けられるよう、教育上必要な支援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3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能力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経済的理由によって修学が困難な者に対して、奨学の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章 教育の実施に関する基本

第五条 (義務教育)

国民は、その保護する子に、 別に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普通教育を受けさせる義 務を負う。

2 義務教育として行われる普 通教育は、各個人の有する能 力を伸ばしつつ社会において 自立的に生きる基礎を培い、 また、国家及び社会の形成者 として必要とされる基本的な 資質を養うことを目的として 行われるものとする。

3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義

신념, 성별, 사회적 신분, 경 제적 지위 또는 가문을 이유 로 교육상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②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가 있는 자가 그 장애의 상태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상 필요 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능력이 있음에도 경제적 이유 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 대해 장학 조치를 강구하여야

제2장 교육의 실시에 관한 기본

제5조 (의무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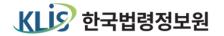
한다.

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따로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교육을 받게 할의무를 진다.

② 의무교육으로서 실시되는 보통교육은 각 개인의 능력을 신장시키면서 사회에서 자립 적으로 살아가는 기초를 기르 고, 또한 국가 및 사회의 역 군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자 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③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務教育の機会を保障し、その 水準を確保するため、適切な 役割分担及び相互の協力の下 、その実施に責任を負う。

4 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設置 する学校における義務教育に ついては、授業料を徴収しな V10

第六条(学校教育)

法律に定める学校は、公の性 質を有するものであって、国 、地方公共団体及び法律に定 める法人のみが、これを設置 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学校においては、教 ② 제1항의 학교는 교육의 목 育の目標が達成されるよう。 教育を受ける者の心身の発達 に応じて、体系的な教育が組 織的に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 い。この場合において、教育 を受ける者が、学校生活を営 む上で必要な規律を重んずる とともに、自ら進んで学習に 取り組む意欲を高めることを 重視して行われなければなら ない。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그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 을 통해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임을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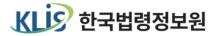
④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학교의 의무교육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 (학교교육)

① 법에서 정하는 학교는 공 공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국 가, 지방공공단체 및 법에서 정하는 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다.

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 받 는 자의 심신의 발달에 맞추 어 체계적인 교육을 조직적으 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 교육 받는 자가 학교생활 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규 율을 존중하는 동시에 스스로 학습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 는 것을 중시하여 실시하여야 하다.





第七条 (大学)

大学は、学術の中心として、 高い教養と専門的能力を培う とともに、深く真理を探究し て新たな知見を創造し、これ らの成果を広く社会に提供す ることにより、社会の発展に 寄与するものとする。

2 大学については、自主性、 自律性その他の大学における 教育及び研究の特性が尊重さ れ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八条(私立学校)

私立学校の有する公の性質及び学校教育において果たす重要な役割にかんがみ、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その自主性を尊重しつつ、助成その他の適当な方法によって私立学校教育の振興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九条 (教員)

法律に定める学校の教員は、 自己の崇高な使命を深く自覚 し、絶えず研究と修養に励み 、その職責の遂行に努めなけ 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教員については、その使命と職責の重要性にかん

제7조 (대학)

- ① 대학은 학술의 중심으로서 고도의 교양과 전문적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진리를 깊이 탐구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 하고 이 성과를 널리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 ② 대학은 자주성, 자율성, 그 밖의 대학에서의 교육 및 연 구의 특성이 존중되어야 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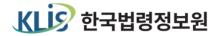
제8조 (사립학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학교 교육에서의 중요한 역할에 비추어그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원조,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해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교원)

- ① 법에서 정하는 학교의 교원은 자신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 그 직무의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교원에 대하여는 그 사명과 직책의 중요성에





がみ、その身分は尊重され、 待遇の適正が期せられるとと もに、養成と研修の充実が図 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条 (家庭教育)

父母その他の保護者は、子の教育について第一義的責任を有するものであって、生活のために必要な習慣を身に付けさせるとともに、自立心を育成し、心身の調和のとれた発達を図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2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家 庭教育の自主性を尊重しつつ 、保護者に対する学習の機会 及び情報の提供その他の家庭 教育を支援するために必要な 施策を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 ばならない。

第十一条(幼児期の教育)

幼児期の教育は、生涯にわたる人格形成の基礎を培う重要なものであることにかんがみ、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幼児の健やかな成長に資する良好な環境の整備その他適当な方法によって、その振興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비추어 그 신분을 존중하고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는 동시 에 교원 양성과 연수의 충실 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 (가정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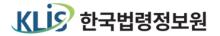
① 부모, 그 밖의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대하여 근본적 인 책임을 지는 자로서 생활 을 위하여 필요한 습관을 기 르게 하는 동시에 자립심을 육성하고, 심신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도모하도록 노력한다.

②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가정교육의 자주성을 존중하 면서 보호자에 대한 학습의 기회 및 정보의 제공, 그 밖 의 가정교육을 지원하기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유아기의 교육)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유아 기의 교육이 생애에 걸친 인 격형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 임에 비추어 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양호한 환경 의 정비, 그 밖에 적당한 방 법으로 그 활성화에 노력하여 야 한다.





第十二条 (社会教育)

個人の要望や社会の要請にこたえ、社会において行われる教育は、国及び地方公共団体によって奨励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図書館、博物館、公民館その他の社会教育施設の設置、学校の施設の利用、学習の機会及び情報の提供その他の適当な方法によって社会教育の振興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三条(学校、家庭及び地域 住民等の相互の連携協力)

学校、家庭及び地域住民その他の関係者は、教育におけるそれぞれの役割と責任を自覚するとともに、相互の連携及び協力に努めるものとする。

第十四条(政治教育)

良識ある公民として必要な政 治的教養は、教育上尊重され なければならない。

2 法律に定める学校は、特定の政党を支持し、又はこれに反対するための政治教育その

제12조 (사회교육)

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개인 및 사회의 요구에 부응 하여 사회 안에서 실시되는 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도서관, 박물관, 커뮤니티 센 터, 그 밖의 사회교육시설의 설치, 학교 시설의 이용, 학습 의 기회 및 정보의 제공,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사회교 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 다.

제13조 (학교, 가정 및 지역주민 등의 상호 연대 협력) 학교, 가정 및 지역주민, 그밖의 관계자는 교육에 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자각하는 동시에 상호 연대 및 협력에 노력한다.

제14조 (정치교육)

- ① 양식 있는 시민으로서 필 요한 정치적 교양은 교육상 존중되어야 한다.
- ② 법에서 정하는 학교는 특 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에 반대하기 위한 정치교육, 그





他政治的活動をしてはならない。

第十五条 (宗教教育)

宗教に関する寛容の態度、宗 教に関する一般的な教養及び 宗教の社会生活における地位 は、教育上尊重されなければ ならない。

2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が設置 する学校は、特定の宗教のた めの宗教教育その他宗教的活 動をしてはならない。

第三章 教育行政

第十六条(教育行政)

教育は、不当な支配に服することなく、この法律及び他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行われるべきものであり、教育行政は、国と地方公共団体との適切な役割分担及び相互の協力の下、公正かつ適正に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国は、全国的な教育の機会 均等と教育水準の維持向上を 図るため、教育に関する施策 を総合的に策定し、実施しな ければならない。 밖에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종교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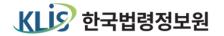
- ① 종교에 관한 관용의 태도, 종교에 관한 일반적인 교양 및 사회생활에서 종교의 지위 는 교육상 존중되어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학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 그 밖에 종교 적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교육행정

제16조 (교육행정)

- ① 교육은 부당한 지배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법 및 다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교육행정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을통해 공정하고 적절히 실시되어야 한다.
- ② 국가는 전국적인 교육의 기회 균등과 교육 수준의 유 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 로 책정하고 실시하여야 한 다.





- 3 地方公共団体は、その地域における教育の振興を図るため、その実情に応じた教育に関する施策を策定し、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教育が円滑かつ継続的に実施されるよう、必要な財政上の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 第十七条(教育振興基本計画)

政府は、教育の振興に関する施策の総合的かつ計画的な推進を図るため、教育の振興に関する施策についての基本的な方針及び講ずべき施策その他必要な事項について、基本的な計画を定め、これを国会に報告するとともに、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地方公共団体は、前項の計画を参酌し、その地域の実情に応じ、当該地方公共団体における教育の振興のための施策に関する基本的な計画を定め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지방공공단체는 지역의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실정에 맞는 교육에 관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교육이 원활하고 계속적으로 실시되도록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진흥기본계획)

- ① 정부는 교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교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및 강구해야 할 시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본적인계획을 정하고 이를 국회에보고하는 동시에 공표하여야한다.
- ② 지방공공단체는 제1항의 계획을 참고하여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공공단 체의 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 책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四章 法令の制定

第十八条

この法律に規定する諸条項を 実施するため、必要な法令が 制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附則抄

제4장 법령의 제정

제18조

이 법에 따른 모든 규정을 실 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부칙